

의안번호	2202977
의 퇴 인	소병훈의원
회 답 일	2024.08.29.
추 계 번호	24C3043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에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6%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조 9,889억원, 2029년 6조 4,305억원 등 5년간 총 22조 1,841억원(연평균 4조 4,368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(A)	48,911	51,051	55,112	59,528	64,305	278,907	55,781
현행제도 유지시 재정소요(B)	19,022	19,022	19,022	—	—	57,066	11,413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A-B)	29,889	32,029	36,090	59,528	64,305	221,841	44,368

- 주: 1.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 기금 지원금(A)은 전전년도 건강보험 수입의 6%로 산출(2025년은 2023년 결산상 수입,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「2023~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」(2023.10.)의 전망치 적용)
 2.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기금 지원금(B)은 기획재정부 「2023~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(2023.09.)과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을 적용
 3. 동 추계는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.06%(최근 3년 평균)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로서,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달라질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2 (기금사용의 특례)	-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함 -(현행) 보건복지부장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함. 다만,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%를 초과할 수 없음 -(개정)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6%에 해당하는 금액 부담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5조의2 (기금사용의 특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 - 2025년부터 기존 국민건강증진기금(이하 “기금”) 지원 유효기간인 2027년까지는 개정안과 현행법의 기금 지원분 산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금액을 추가 재정소요로 계산하고, 기금지원이 일몰되는 2028년부터는 개정안에 따른 기금 지원분 전체를 추가재정소요로 산정

[표 2] 추가재정소요 산정방식

구분	2025~2027년 (법률 제6619호 제2항에 따른 한시적 특례(2027.12.31.) 적용)	2028~2029년 (법률 제6619호 제2항에 따른 한시적 특례(2027.12.31.) 만료 이후)
산정 방식	○ 추가재정소요 = 개정안 - 기준선 - 개정안: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6% - 기준선(현행제도):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%. 단,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%를 초과할 수 없음	○ 추가재정소요 = 개정안 - 개정안: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6% - 기준선: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정소요 발생 없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건강보험료 수입액은 「2023~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」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전망치를 활용
-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현행에 따라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- 현행법상 기금지원 규모인 ‘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%’는 단서조항인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%를 초과하므로, 추계기간 중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%만큼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은 기획재정부 「2023~2027 국가재정운용계획」(2023.9.)과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을 준용하고, 2027년 이후에도 2027년 예상 수입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－ 2024년 법정 부담금 예상 수입액은 2조 9,264억원, 국민건강증진기금의 “건강보험가입자 지원” 예산은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%인 1조 9,022만원이 배정되었으며,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에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지원 금액을 ‘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%’에서 ‘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6%’로 변경하는 동시에 단서조항(기금 지원액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%를 초과할 수 없음)을 삭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추계함
- 추가재정소요는 현행법에 따른 기금 지원이 유지되는 기간(2025~2027년)과 현행법에 따른 기금 지원이 일몰된 이후의 기간(2028~2029년)으로 구분하여 추계
- (2025~2027년) 개정안에 따른 ‘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6%’에서 현행법에 따른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추계
 - － 2025년은 2023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실적치를 적용하고, 2026년 이후로는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준용
 - －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은 기획재정부 「2023~2027 국가재정운용계획」(2023.9.)과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을 준용
- (2028~2029년) 개정안에 따른 ‘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6%’를 추가재정소요로 추계

[표 3] 건강보험료 수입액: 2023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3 (실적치)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건강보험료 수입액	815,180	850,850	918,541	992,127	1,071,756	1,157,408	1,250,741

주: 2023년은 실적치, 2024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「2023~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」(2023.10.)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치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추계결과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조 9,889억원, 2029년 6조 4,305억원 등 5년간 총 22조 1,841억원(연평균 4조 4,368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(A)	48,911	51,051	55,112	59,528	64,305	278,907	55,781
현행제도 유지시 재정소요(B)	19,022	19,022	19,022	—	—	57,066	11,413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A-B)	29,889	32,029	36,090	59,528	64,305	221,841	44,368

주: 1. 개정안에 따라 산정된 기금 지원금(A)은 전전년도 건강보험 수입의 6%로 산출(2025년은 2023년 결산상 수입,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「2023~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」(2023.10.)의 전망치 적용

2. 현행법에 따라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된 기금 지원금(B)은 기획재정부 「2023~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(2023.09.)과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을 적용

3. 동 추계는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2.06%(최근 3년 평균)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로서,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달라질 경우 추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단서조항(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%를 초과할 수 없음)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6%를 지원할 경우, 향후 5년간 연평균 기금 재정소요는 5조 5,781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수입을 초과할 수 있음

- 2023년 결산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은 4조 5,238억원, 2024년 수입 계획은 4조 5,581억원으로, 최근 증가 추이를 고려한다면 개정안에 따른 기금 수입의 재정소요가 기금 총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보임¹⁾
- 다만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, 본 추계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수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1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22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은 부담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이며, 2023년 결산 기준 부담금은 2조 9,737억원으로 총수입(정부예금회수, 예수금, 전입금,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등)의 65.7%를 차지함. 기금 총수입이 최근 3년(2021~2023년) 연평균 증가율인 2.6%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, 2025년 4조 7,584억원, 2029년 5조 2,649억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기금 재정소요를 하회함